

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일부 개정정관(안)

1. 의결주문

-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일부개정정관(안)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관계법령 기준과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부규정 내용을 일치
-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규정의 범위를 법인의 모든 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

3. 주요내용

- 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제1항 각 호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를 반영하여 ①항 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, 3 ~ 5호를 삭제하며, 관계법령을 구체화하여 10호를 삭제하고, 11 ~ 12호를 신설함
 - ①항 2호 ‘미성년자·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’을 ‘미성년자’로 개정
 - ①항 3 ~ 5호, 10호 삭제
 - 3.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 - 10. 기타 다른 법률에 임원의 결격사유 등으로 제한된 자 (신설 2017.1.17.)
 - ①항 11 ~ 12호 신설
 - 1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 - 1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〈 지방공무원법 〉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〈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〉

제9조(임원)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, 그 출자·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- 제24조(의결사항) 제6호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서 ‘중요한’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모든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내용으로 명확화함

4. 시행절차

- 시의회 보고 → 이사회 의결 → 서울시 승인 → 주무관청 허가

5. 참고사항

- 관련근거

- 투자·출연기관 주요규정 점검 및 정비 추진

- 기 타

-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- 붙 임

- 투자·출연기관 주요규정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(市공기업담당관-5851호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(생략) -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(개정 2017.1.17.) -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-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(개정 2017.1.17.) -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-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- 법인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(신설 2017.1.17.) - 노동이사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 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(신설 2017.1.17., 개정 2020.1.21., 2020.9.24.) - 기타 다른 법률에 임원의 결격사유 등으로 제한된 자 (신설 2017.1.17.) ② ~ ③ (생략)	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(현행유지) <u>미성년자 (개정 2017.1.17., 2021.00.00.)</u> ~ 5. (삭제 2021.00.00) 6 ~ 9 . (현행유지) 10 . (삭제 2021.00.00.) 1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(신설 2021.00.00.) 1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(신설 2021.00.00.) ② ~ ③ (현행유지)
제24조(의결사항)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회의결을 거쳐야 한다. 1~5. (생략) -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7~11. (생략)	제24조(의결사항)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회의결을 거쳐야 한다. 1~5. (현행유지) <u>6. 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(개정 2021.00.00.)</u> 7~11. (현행유지)

현행	개정안
	부칙 (2021. 00. 00.)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